

[사 건 명] 행심 2019 - 9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 처분을 취
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서로 친하였으나, 2019년 4월 중순부터 친구문
제와 말투로 자주 다투었고, 2019. 4. 30. 급식실에서 피해학생이 청구인이
먹고 있는 밥을 보고 ‘개밥’ 같다는 말을 하여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갈
등이 심화되었다.

나. 2019. 4. 30. 저녁, 피해학생이 000 학생(소외 가해학생)에게 서로의
욕을 한 것에 대하여 따졌고 이에 000 학생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청
구인과 대화를 한 후, 피해학생이 욕을 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2019. 5. 1.
01:00경부터 청구인, &&&, 000 학생이 SNS상에서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였
고, 000 학생의 남자친구들도 가세하여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5.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고 함.)를 개최하여 2019. 5. 27.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 조치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이 사안은 복잡하고 친구들과의 이간질과 갈등이 얽혀 있고 SNS상의 대화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신고 학생의 진술만을 기초로 청구인에게는 사실확인서만 받고 진술할 내용이 있으면 회의 때 하라고 하여, 청구인 측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지나 의견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청구인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피해학생은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뒷담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친구들의 관계를 해치는 이간질 언행을 수차례 하여 청구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3회에 걸쳐 상담실에 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첨부되는 자료를 보면 피해학생이 친구들에게 했던 욕설은 차마 학생들이 입에 올리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다.

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친구관계의 이간질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단체대화방에서 대응하는 욕을 한 번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으며,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조치는 동일하였지만 피해학생 보호 조치는 피해학생만 받았다.

라.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언어폭력 등을 참아오며 친구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른 가해학생들과 달리 피해학생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며, 사안 발생 후 제대로 된 의견 진술이나 구체적인 피해·가해 상황도 모르고 참석한 청구인의 답변만으로 ‘화해정도’를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해당 조치 결정 취소를 위해 제출한 페이스북 메신저 자료(갑 제2호증)는 본 사안이 발생한 시점보다 약 4주전인 2019. 4. 3.경의 내용이며, 청구인의 진술서에 피해학생과 전화 통화로 사과하고 고맙다고 하며 잘 끝냈다고 진술되어 있기에 깊은 관련이 없다.

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 절차에 따라 관련학생 4명에게 진술서 징구 과정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학생들의 가·피해 사실을 대부분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과 관련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페이스북 메신저 전문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사안 조사의 필요성이 낮았으며, 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든 학생들이 ‘관련학생’으로 적용되며, 학교폭력 신고를 먼저 한 학생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피해학생’ 취급하여 사안을 조사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9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가이드북’의 절차 등에 근거하여 사안 발생 후 지체 없이 관련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접수상황 및 관련학생, 사안의 개요 등을 우선으로 통보하였고, 자치

위원회에서는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는 약 36분간의 장시간 진술을 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2019. 4. 30. 페이스북 메신저에 단 한 번의 욕을 해서 가해학생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2호 증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먼저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학생이 사과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화해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였으며, 피해학생의 이간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000이 만든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보면 욕설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마.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가해학생 선도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학생도 청구인 등에게 심한 욕설과 헐담, 이간질 등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함께 결정하였으며, 피해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학생들의 조롱 및 협박성 글에 대하여 심각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피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의 보호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바. 학교폭력 기본 판단요소 ‘화해정도’ 는 ①학생 및 보호자 포함 화해 성립 여부 ②보호자간 갈등 여부 ③수사기관 등 민원 제기 여부 ④요구사항의 실현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의 경중과는 무관한 항목이며,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진술은 화해정도 ‘없음’ 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으나, 청구인이 ‘이전처럼 지낼 자신은 없지만 화해를 할 생각은 있다’ 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의 보호자가 화해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화해정도를 ‘낮음(3점)’ 으로 판단하였다.

사. 자치위원회에서는 관련학생들의 진술과 진술서,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사안에 대한 이해와 사안의 경중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복수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당 조치를 결정하였기에 교육적으로 타당한 결정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구술 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 5. 1. 01:00경부터 청구인, &&&, 000 학생이 SNS상에서 피해학생에게 욕설 등을 하였고(청구인은 SNS상에서 피해자에게 또 싸지르네, 뭘 개 소리야, ㅋㅋㅋ@갈게 구네 진짜, 왜 **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와서 지랄하는데, ** 뭐 병신아 등 많은 욕설을 하였음), 000 학생의 남자친구들도 가세하여 피해학생에게 욕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SNS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또 싸지르네, 뭘 개소리야, ㅋㅋㅋ@갈게 구네 진짜, 왜 **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와서 지랄하는데, ** 뭐 병신아 등)을 한 행위 등은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

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등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